

●국토교통부령 제143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1개의 시·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그 사업을 관장한다.

제8조제8항제1호나목 본문 중 “1개소”를 “2개소 이내”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를 “안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의”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구간
- 2) 중간정차지와 중간정차지 간의 구간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0씨씨”를 “1,000시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600씨씨”를 각각 “1,600시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900씨씨”를 “1,900시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2,800씨씨”를 “2,800시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이하 “택시운전자격증”이라 한다) 사본

제21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이하 “택시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 다. 택시운전자격증

제32조제3항제3호 중 “법 제5조의2제4항”을 “법 제5조의3제4항”으로, “법 제5조의2제3항”을 “법 제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5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사목을 삭제한다.

-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3조의10의 제목 중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한다.

제103조제5호 중 “장애인 등”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자동차의 종류란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승용자동차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별표 2 제3호라목의 시설기준란 중 “운송종사자”를 “운수종사자”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특별시 및 광역시란 중 “20대”를 “10대”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배치되는 자동차의 대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에 상주(常住)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현황 등 경영실태를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의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수교육	1)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2)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4	격년
	3)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매년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3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운전자격증,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및 검사공무원증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 내용	사업기간		운전면허증번호		
	사업구역				
	차고지				
택시운전 자격증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의사결정	→	시설 등 확인 (신청인 통보)	→	면 허
신청인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기간 5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면허연월일		
	사업면허번호		자동차번호		
대리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개월간)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 하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 당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3.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리운전자에 관한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리운전자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자동차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합니다)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합니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양도자 (파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운전면허번호				
양수자 (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자동차번호				양도가격	
양도·양수사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 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택 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 음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3,000원
	양수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증명하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제출합니다)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해외이주확인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수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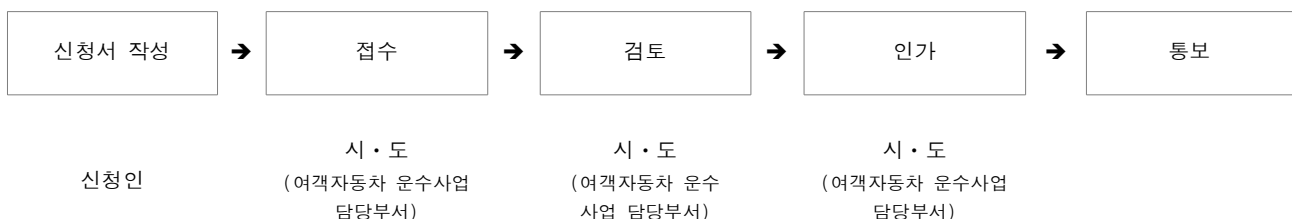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나.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마. 61세 이상인 경우
-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사업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수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사진 (3.5cm×4.5cm)
② 주소						
③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④ 운전면허증	(번호)	(종류)				
⑤ 응시자 제출 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응시자 제출서류(택시운전자격 시험 응시자 중 시험과목 일부를 먼저 받으려는 자에 한정하며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1. 다른 지역 택시 종사자() 2.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 증명 관련 서류() 3. 「도로교통법」 제146조 관련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⑥ 수험번호			*⑦ 시험장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하며, 만일 시험에 합격 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합격취소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응시자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응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표

*⑧ 수험번호			사진 (3.5cm×4.5cm)
*⑨ 시험일시			
*⑩ 시험장소			
⑪ 성명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인			

택시운전 자격시험 면제과목 확인	면제과목	면제과목	비 고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 ()	

응시원서 작성방법

1. ①항은 응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2. ②항은 응시자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3. ③항은 응시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4. ④항의 운전면허증의 번호에는 응시자가 취득한 운전면허의 번호를 정확히 적으시고,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적습니다.
5. ⑤항의 첨부서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중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자에 한정하며, 해당란에 체크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다른 지역 택시 종사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해야 합니다.
6. *⑥, *⑦, *⑧, *⑨, *⑩항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은 후 정해진 기입란에 빠진 사항이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응시하지 못하며,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 1장 제출).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 오른쪽 위에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이탈한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 안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 대어를 금지합니다.
6.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즉석에서 퇴장을 명하며, 그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7.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버스 [] 운전자격증
[] 택시 [] 운전자격증명 발급, 정정 및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운전 자격증	자격증번호(정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등록연월일(정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청사유	[] 신규발급 [] 정정발급 [] 재발급				
정정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운전자격증 및 운전자격증 명의 발급, 정정 또는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첨부서류	1. 운전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운전자격증 발급 : 사진(3.5cm×4.5cm) 2장 나. 운전자격증명 발급 : 사진(3.5cm×4.5cm) 2장 2. 운전자격증(명)의 정정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운전자격증 정정 또는 재발급 1) 운전자격증(운전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사진(3.5cm×4.5cm) 1장 나. 운전자격증명 정정 또는 재발급 1) 운전자격증명(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사진(3.5cm×4.5cm) 1장
------	--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휴대용)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사진

(3.5cm×4.5cm)

위의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인

85mm×54mm [백상지 150g/㎡]

(뒤 쪽)

운수종사자 유의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본 자격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본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제 호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1. 소 속:

2. 직 명:

3. 성 명:

4. 생년월일:

사 진

(3.5cm×4.5cm)

교육실시기관

직인

190mm×68mm(보존용지 80g/㎡)

(제2쪽)

주 의 사 항

1. 이 카드는 근무시간 중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2. 이 카드는 지정된 교육을 마치고 해당란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이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발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3쪽)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제 4 회	제 5 회	제 6 회	제 7 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8 회	제 9 회	제 10 회	제 11 회	제 12 회	제 13 회	제 14 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앞 쪽)

제 호

검사공무원증

(유효기간: . . .까지)

사진

3.5cm×4.5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

60mm × 90mm (백상지 160g/m²)

(뒤 쪽)

검사공무원증

직위/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1. 이 검사공무원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
다.

2. 이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명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를 즉시 발행처에 통보하고 재발급을 받
아야 합니다.

4.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행처에 반납해야
합니다.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심의기능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1개의 시·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중간정차지 개소를 확대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 보유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관할관청(안 제3조제3항 신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1개의 시·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도록 함.

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중간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항제1호나목)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등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행정구역 안의 각 2개소 이내에서 중간정차할 수 있도록 확대함.

다. 대형 택시운송사업의 지역적 범위 확대(안 제9조제1항제4호)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에서도 배기량 2천cc 이상이고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한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안 제10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변경하도록 함.

마.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3 제1호 및 제2호)

- 1) 주사무소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를 종전의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함.
- 2)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주기 확대(안 별표 4의3 제1호나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이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경우 종전에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격년 주기로 받을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